

## 예가람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», 「거치식예금 약관»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»,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
1

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2

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입대상             | 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입금액             | ▷ DB형 : 제한 없음, ▷ DC형 및 IRP형 : 1억원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기간             | ▷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1년, 2년, 3년<br>▷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금자<br>보호여부      | DC/IRP <b>[예당]</b>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br>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|
|                  | DB <b>[비해당]</b>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용이율<br>(세금납부 전) | ▷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정이율 적용<br>※ 신규(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계산방법           | ▷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(원미만 절사)<br><div><div>신규일</div><div>만기일</div><div>[이자계산 산식] 원금 × {(1+약정이율/12)<sup>n</sup> - 1} (n은 경과월수)</div></div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지급방식           | ▷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만기처리방법      | <div>▷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<br/>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div> <div>▷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<br/>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.<br/>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div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예금 해지 시 불이익 | <div>▷ 만기 전 예금해지 시 <b>중도해지이자율</b> 적용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 | <div>▷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과 동일</div> <table><tr><th>보유기간</th><th>1개월 미만</th><th>1개월 이상~<br/>6개월 미만</th><th>6개월 이상~<br/>12개월 미만</th><th>12개월 이상</th></tr><tr><td>차등률</td><td>보통예금 이율<br/>(0.20%)</td><td>약정이율*50%</td><td>약정이율*55%</td><td>약정이율*70%</td></tr></table> <div>예시) ※ 기본산식 : 신규(또는 재예치)시점 약정금리 × (차등률) × (보유기간/계약기간)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유기간              | 1개월 미만             | 1개월 이상~<br>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~<br>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| 차등률 | 보통예금 이율<br>(0.20%) | 약정이율*50% | 약정이율*55% | 약정이율*70% |
| 보유기간        | 1개월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이상~<br>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~<br>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차등률         | 보통예금 이율<br>(0.2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정이율*50%          | 약정이율*55%           | 약정이율*70%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특별중도해지 사유   | <div>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div> <div>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/div> <div>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div> <div>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div> <div>5. 수탁자의 사임</div> <div>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div> <div>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/div> <div>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/div> <div>9. 수수료의 징수</div> <div>10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div>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| <div>▷ 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.<br/>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</div> <div>1. 예치기간 6개월 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div> <div>2. 예치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div> <div>3. 예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div> <div>4. 예치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div> <div>5. 예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: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div> <div>※ 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</div>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분할 지급<br>(일부 지급) | <p>▷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</p> <p>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/li> <li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</li> </ol>        |
| 계약의 해지           | ▷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한사항             | <p>▷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p> <p>▷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료열람<br>요구권      | <p>▷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p> <p>▷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▷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|

### 3

###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바 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가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사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예가람저축은행 고객센터(1877-7788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yegaramsb.co.kr](http://www.yegaramsb.co.kr)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